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12.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1월 2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11월 2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 86회(제2차정례회) 제8차 위원회(2001.12.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구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 운영됨에 따라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무인 증명 민원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제2조3항 신설)
- 구청장 공인 관수부서를 시민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개정(안 제3조1항)
-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 공인은 무인민원발급 전용임을 표시함(제3조2항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전자정보화 수준향상으로 민원인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전자문서 사용과 증명발급의 토대가 되는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이는 우리 정부의 선진 정보화 정책에 따라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민의 삶이 질을 향상시키는 조치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년월일 : 2001. 11. 2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들의 민원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 운영됨에 따라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무인 증명 민원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제2조3항 신설)
- 나. 구청장 공인 관수부서를 시민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개정(안 제3조1항)
- 다.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 공인은 무인민원발급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함 (제3조2항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6609호 일부개정 '99. 12. 7)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입법예고 조례 제5조2항, 3항)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항의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동조제2항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 무인민원발급기용”으로 하며 “민원사무용임을”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용일 경우 무인민원발급전용임을” 추가하고, 동조제4항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를 “공인(구청장 공인중 민원사무용 포함)은 주무주사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인의 종류)</p> <p>①(생략)</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p> <p>①구청장의 공인은 <u>시민과에</u>, 기타 기관·장</p> <p>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을 <u>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u>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 공인은 <u>민원사무용임을 표시</u>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u>시민생활계</u>이, 민원사무용은 <u>민원봉사계</u>장이 관수한다</p>	<p>제2조(공인의 종류)</p> <p>①(현행과 같음)</p> <p>② "</p> <p>③행정기관은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u>전자이미지 공인</u>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p> <p>①구청장의 공인은 <u>민원봉사과에</u>, 기타 기관·의 장</p> <p>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을 <u>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 무인민원발급기용</u>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u>민원사무용임을 표시</u>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용일 경우 무인민원발급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동장의 공인(구청장 공인중 민원사무용·합)은 <u>주무주사가 관수</u>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12.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1월 21일 이종환 의원의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11월 2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 86회(제2차정례회) 제8차 위원회(2001.12.11) 상정의결